

의안번호	2215691
의 퇴 인	박균택 의원
회 답 일	2026. 4. 1.
추 계 번호	25B73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나.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신설> ※ 현행법상 “농촌”의 범위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농촌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5호나목 신설)

- 현행법은 “농촌”을 읍·면의 지역과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읍·면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촌 지역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식품고시, 제2015-171호)**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개정안은 “농촌” 지역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이 농촌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농촌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자료] 현행법에 따른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 참고

- 다만, 생활인프라 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지원되는 생활 SOC, 주거시설, 빈집 리모델링 및 돌봄·의료·교통 서비스 지원 관련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신청에 따라 중앙정부 등의 평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로, 현시점에서는 농촌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농촌 지역에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농촌” 지역으로 포함되는 곳에 “농업인”이 얼마나 거주하는지 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현행법에 따른 농촌지역 지원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6년 예산(백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	농촌형 생활 SOC 등	505,167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농촌	체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등	2,700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농촌	수거지원반 활동지원	6,848
농촌소멸대응빈집재생사업	행정리	빈집리모델링	825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행정리	주거환경 개선	120,473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촌	공공임대주택 등	33,400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사업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1,030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농촌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3,466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농촌	빈집 철거 지원	10,500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촌·준농촌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지원	341,351
농촌돌봄활동지원	농촌	영유아 돌봄 지원 등	7,077
농촌왕진버스	농촌	의료보건서비스 지원 등	4,670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농촌 유해시설 정비 등	151,861
농촌형교통모델	군 지역	교통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28,991
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	농촌	농촌유희시설 리모델링 등	2,270